

일본에서 산림경영과 인증·라벨링제도의 동향(하)

白乙善 / 임업연구원, 임업제도연구실장

〈전월호에서 계속〉

2. FSC에 의한 산림인증

최근 환경에 대한 캠페인이나 에코마크가 붙은 상품은, 이제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회사는 이번에 ISO 14001을 취득했다”는 광고도 보게된다. 지금은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배려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시대이다. 임업이나 관련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산림문제는 이미 환경문제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저널리스트들이 열대림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산림문제, 특히 열대림 파괴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동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소위 환경에 바람직한 혹은 환경에 부하가 적은 물건을 사고자 하는 녹색소비자보호운동(green consumerism)의 의식이 높아져 갔다. 산림문제와 높은 소비자의식이 겹쳐지면서, 임산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하에서 생산된 목재를 구

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높은 의식은, NGO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였다. 1990년경에, 그러한 소비자의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고, 동시에 과학적인 지식에 입각하여 그러한 「위장」에코라벨을 없애기 위해 인증·라벨링이 제안되었다.

한편, 1997년에는 세계은행과 WWF(세계자연보호기금)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05년까지 세계의 응자대상국을 대상으로 5천만ha의 산림보호구를 설치할 것, 그리고 산림인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05년까지 2억ha 이상의 적절히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해 인증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세계은행과 WWF에서 그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후에 각국에서 협의되어 추진되었지만, 1993년에는 25개국, 130명의 대표가 모여 FAS의 설립대회가 열리게 되었다(그림 5). 여

기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서 소위 열대재 보이 코트가 있지만,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어느 특정지역의 벌채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다면 상관없지만, 열대재 모두가 문제라는 식으로 확산된다면, 적절히 산림을 관리하는 임가조차도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농지나 광산개발 등으로 추진될 우려도 있으며, 산림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 조차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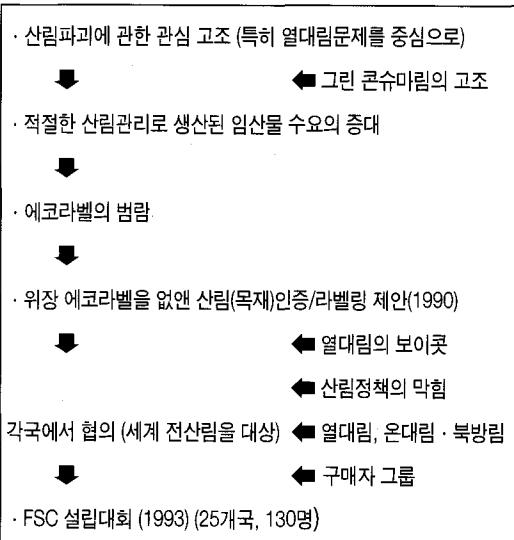


그림 5. FSC 설립배경

그러한 논의동향은 열대림에만 국한시켜도 지구촌차원의 효과적인 산림보전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산림을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그럴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폭넓은 합의를 얻은 기준에 입각한 인증이나 라벨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독립된 제3자기관이 산림관리의 일정기준에 비추어, 만족할만한 수준

인가의 여부를 평가·인증하기 위한 「산림인증제도」가 제안되고, 그 추진을 위해 FAC(산림관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세계의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라벨링 형태로 인증하는 유일한 단체가 FSC이다.

FSC는 1993년에 설립되었는데, 1999년 7월 현재 49개국, 313기관이나 개인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WWF일본(재단법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이 가장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FSC에 의해 인증된 산림은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30개국 계 170개소, 면적합계는 1,600만ha를 넘는다. 특히 스웨덴에서의 증가가 큰데, 유럽에서는 수요과다로 공급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FSC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를 간단한 개략도로 살펴보면(그림 6), FSC는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아도 적절하고, 사회적인 이익에 합당한,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SC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가. 최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던가 적절한 관리기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기준·지표중 어떤 점이 산림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누가 어떠한 형태로 판단할 것인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평가·인증작업을 FSC가 자체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실제 인증은, FSC에 의해 인증된 인증기관이 실행한다. 구미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기관도 있는데, 현재 FSC가

환경보전측면에서 보아도 적절하고, 사회적인 이익에 합당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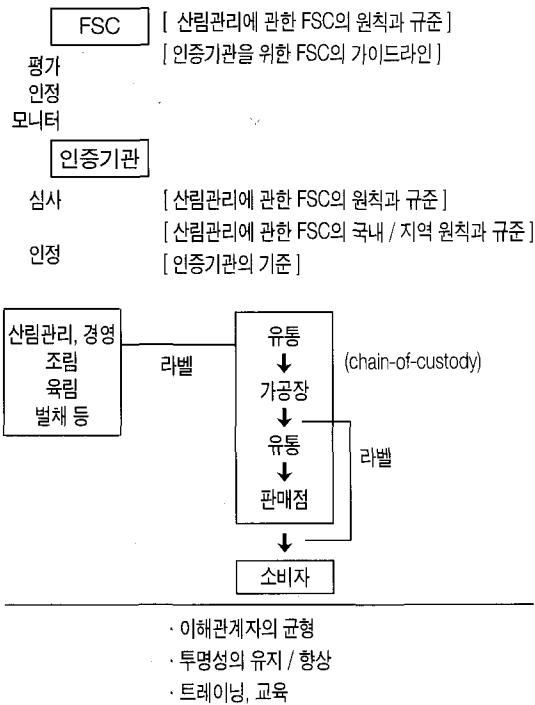


그림 6. FSC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증한 인증기관은 세계에 6개가 있다. 미국에 2, 영국 2, 네덜란드 1, 스위스 1개소가 있다. WWF는 FSC의 회원이지만, 인증기관은 아니다.

FSC에서는, 의사결정은 회원이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원은 구성원이 되면, 우선 경제, 사회, 환경의 3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FSC 구성원에 들어간 자는 각기 경제, 사회, 환경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경제그룹에는 임업이나 소매, 도매를 하는 기업들이 들어 있고, 사회그룹에는 원주민 혹은 노동조합

관계자, 환경그룹에는 환경NGO 등이 각각 1/3씩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그룹이 많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는 1/3밖에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룹 별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남과 북의 사정들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투표권이 분할된다. 예를 들어 환경그룹은 전체의 1/3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 중 남측이 50%, 북측이 50%를 갖는다. 경제그룹도 마찬가지이며, 거기에서 총회가 열린다. 총회에서 여러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우송투표로 결정된다.

인증취득을 위해서는, FSC에 의해 인증된 인증기관에 의한 심사가 필요하다. FSC에서는, 산림관리에 관한 10원칙(표 2)과 그 아래 56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각 인증기관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역 · 산림의 실상을 가미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만든다. 원칙과 기준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된 산림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FSC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

표 2. 산림관리에 관한 FSC의 원칙(요약)

- ① 각국의 법률이나 국제조약, 그리고 FSC가 정한 기준을 지킬 것
- ②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하는 권리는, 명확히 해 둘 것
- ③ 본래 그 토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할 것
- ④ 산림관리는, 지역사회나 지원민들에 있어서도 유익한 것일 것
- ⑤ 산림의 여러 혜택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⑥ 산림에 사는 생물의 환경이나 경관을 중요시할 것
- ⑦ 사업시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수법을 명확히 하여 추진할 것
- ⑧ 산림의 상태, 산출된 목재의 양, 작업상태를 조사 · 평가할 것

- ⑨ 귀중한 자연림은 지키고, 조림등으로 치환하지 않을 것
- ⑩ 조림에 대해서는 이상의 원칙을 지킬 것. 조림의 활용을 사회의 유익한 활동이 되도록 하고, 자연림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할 것

심사이므로 합격·불합격이 있다. 순조롭게 인증을 취득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을 개선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건이나 제언과 함께 일단 반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 1년 후에, 최초보다 간략화된 재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본래 적절한 산림관리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 인증제도이므로, 어느 정도 엄격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한번 인증을 취득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후에도 1년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증효력은 5년이므로, 그 후에는 다시금 취득해야 하는데, 재취득시 비용은 최초보다는 감소된다고 한다.

인증대상은, 산림이나 그곳에서 생산된 목재만이 아니라, 그 후의 가공·유통과정도 포함된다. 원재료가 가공공장에 가면, 그것도 하나의 인증에 들어간다. 확실하게 인증된 산에서 벌채된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가의 여부, 예를 들면 원생림을 벌채한 나무가 혼입되고, 그것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체크한다. 이것은 유통가공관리과정의 인증으로서 통칭 COC(chain-of-custody)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그 마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증비용은, 현재 일본에 인증기관이 없으므로 해외에서 인증기관을 초빙하는 관계로 비

용이 상당히 들게된다. FSC의 방침에서는 대규모 임업자와 중소임업자에게 기회의 불균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전술한 ISO 14001이란, 기업이 환경부하를 경감시켜 가기 위한 환경 매니지먼트시스템 규격이며, 인증이나 라벨링은 없다. 그렇게 본다면 FSC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지만, 양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FSC에 인정을 받게 되면, FSC의 인증마크가 부여된다(그림 7). 이 마크는 산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산이나 나무에 대한 조사표를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OK」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데, 그 알기 쉬움이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7. FSC의 인증마크



한편, 유럽에서는 소비자가 라벨이 붙은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산림보전형 임업을 지원하고자 구매자그룹(buyer's group)이 결성되어 있다. 이것은 인증된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모임들이다. 이러한 단체는 현재 유럽에서 영국, 네

델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스페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에 설립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국의 구매자그룹 명단을 보면, 참가회사 수는 90개사, 연간 총매상은 약 530억파운드에 달하는데, 이 중 목재제품량은 총매상액 기준으로 30억파운드, 그룹 전체적인 목재거래량이 연간 700만m³로서 영국 목재총소비량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러한 기업들, 즉 영국에서 유명한 제이센즈베리라던가 데스코, 영국 최대의 DIY 체인점인 B&Q 등이 금후, 인증된 목재를 구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그러한 구매자그룹을 만들려는 구상이 있는 것 같다. WWF일본에서도, 일본은 많은 목재를 수입하는 소비국으로서, 지구 환경보전에 일정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인정방법의 하나로서 그룹인증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임가들이 단독으로 인증받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룹으로 인증을 받으므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받는 기회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업방침이나 환경방침이 전체적인 의사로 취합된다면,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룹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인증취득을 향하여 각종 움직임이 있다. 미에(三重)현에서 淀水林業이 인증을 취득하였고, 고치(高知)현에서 縣의 주도하에 四万十川流域을 모델지역으로 설정하

여, FSC 산림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중이다. 그 외에도 나가노(長野)縣, 이와테(岩手)縣, 오이타(大分)縣 등에서 움직이고 있다. 산림인증을 받으면, 목재는 적절하게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라벨링에 의해 명확히 된다. 소비자도 구매형태에 따라서는 산림보전형 임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산림인증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인증자 양성강좌를 통해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산림관련기업이나 산주들에게도 인증이 도내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회 등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지역별 또는 국별 인증기준을 만들고 있지만, 역시 FSC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이므로, 그것과 정합성을 지니면서, 일본에 맞는 인증기준을 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에도 실제로 인증받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있지만, 일본에 인증기관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육림,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학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기존의 해외인증기관의 파트너가 되어 일본의 관계법률, 산림계획제도등에 비추어, 혹은 지역에서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인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표 3).

표 3. 산림인증제도 / FSC의 금후 일본에서의 전개

□ 수 요
① 구매자 그룹의 설립 (일본에서 구매자 그룹이 설립될 것인가의 여부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설립되면, 국내외의 빈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추측된다.)
□ 공 급
② 국내의 산/산림인증 · 기존 인증기관의 일본인 파트너(특히 육림, 산림생태분야)와 함께 인증 · 인증자 양성강좌 → 「국내 인증기관」의 설립 · 국내 산림인증을 위한 「FSC 국내인증기준」의 작성(FSC 멤버를 늘리고, FSC 국내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행한다)
③ FSC의 인지도를 향상시킨다 (국내에서 FSC멤버를 늘린다 → FSC 국내 워킹그룹 등 결성 → 최종적으로는 FSC 국내사무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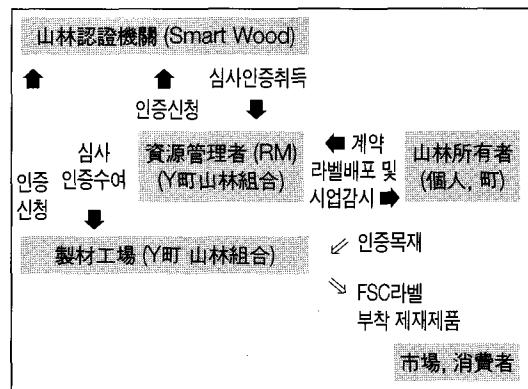


그림 8. 산림인증제도의 개요

유자와 지속적 산림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자원관리자가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인증 기관은 심사 후 인증하는데, 자원관리자는 계약체결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인증라벨을 배포한다. 자원관리자와 산림소유자가 일치되지 않고 산림소유자가 많은 경우를 그룹인증이라고 한다.

제재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이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공장이 인증된 목재를 사용하고, 제재과정에서 다른 비인증목재의 혼입이 없다는 것을 심사한 후, 인증라벨의 사용을 허가한다. 제재공장은, 인증목재제품에 대하여 인증라벨을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高知縣의 그룹山林認證

최근 일본에서도 산림인증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산림인증조직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산림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Y町 및 Y町 산림조합의 사례를 소개한다.

(1) 山林認證에 대한 준비

가. 山林認證의 열개

이번에, 신청한 FSC 산림인증제도에서의 산림관리 인증과, 가공·유통과정의 관리인증 중 제재공장 인증은 <그림 8>과 같다.

산림관리 인증에서는, 우선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資源管理者 (Resource Manager)를 결정하고, 자원관리자는 산림소

나. 지금까지의 과정

지금까지의 주요한 과정과, 금후에 대하여 <표 4>에 정리했다.

표 4. Y町의 산림인증에 대한 준비과정

1998. 10 高知縣 주최 제1회 산림인증 연구모임 개최
1998. 11 高知縣 주최 제2회 산림인증 연구모임 개최

縣이 영국 인증기관 SGS로부터 강사 초빙. 이 무렵 Y町과 Y町 산림조합이 산림인증에 대한 준비를 결정하였다.
1999. 2 조합총회에서町의 제1회 산림인증연구모임 개최 일본 WWF로부터 강사 초빙
1999. 5 町과組合의 합동으로, 소유자들에게 참가 호소
1999. 6a 町과 조합주최로 제2회 산림인증연구모임 개최. 縣의 담당자와 협의
1999. 6b 高知縣主催 제3회 산림인증연구모임 개최 Smart Wood로부터 認證審査者 초빙, Y町에서 현지검토
1999. 7 조합이 개별적으로 임기방문, 인증참가 호소, 그후 인증신청서 작성
1999. 12 신청서 제출 (今後)
2000. 3 산림인증 심사
2000. ? 인증심사 결과
2000. ? 성공한 경우 四万十三流域의 다른 市町村에서도 인증 준비

1998년에 高知縣 주최로 산림인증제도 연구모임을 갖고 인증준비를 시작했다. 이 연구모임을 통하여 Y町과 Y町 산림조합은, 町 산림조합이 제재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산림인증이 제재품의 브랜드화나 차별화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임업도 환경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대적인 요청, 高知縣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후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제도 준비를 결정하였다. 高知縣에서도, 최종적으로는 四万十三流域 전체의 인증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Y町과 Y町 산림조합이 임업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인증조건이 가장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Y町에서 산림인증 취득을 하도록 했다. 1999년 5월에는 高知縣 주최로 Y町과 Y町 산림조합의 협력하에, 미국인증기관인 Smart Wood로부터 인증원을 강사로 초빙하고, 구체적으로 인증받고자하는 Y町의

산림과 제재공장에서 현지검토회를 하고, 인증의 열개, 현상태의 Y町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때의 논의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은 미국의 Smart Wood가 선택되었다.

이 사례와 같이 제재공장을 포함하여 산림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산림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Y町의 산림소유구조가 민유림 주체이며, Y町 산림소유자의 참가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산림소유자에 대한 계몽활동과 더불어, 참가를 호소하고, 신청참가자를 모아 1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山林認證申請의 現狀

이번의 경우, Y縣 산림조합이 자원관리자가 되어 산림관리그룹의 인증신청을 하였다. 신청된 임분의 소유자는 95인(가족인 개별로 집계)이고, 소유구성은 町有林과 사유림이다. 면적은 약 1,800ha(이중 町有林 641ha)이며, Y町 산림면적의 약 10%이다. 또한 Y町 산림조합은 12,600m³의 원목가공능력이 있는 제재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인증산림에서 목재의 제품화를 목적으로 가공·유통과정의 관리에 대한 인증신청을 하였다.

신청서류는 관리경영계획서와 Smart Wood 定型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였다. 신청서류의 데이터源으로서는 山林簿, 山林基本圖, 施業履歷, 희소종에 대한 자료로서 高知縣이 작성한 레드데이터북, 地質調查圖, 地形圖 등이었다. Y町 산림조합에서는 산림부, 산림기본도, 시업이력의 정비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번 자료작성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라. 신청서 작성의 문제점

산림의 지속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일본의 산림계획제도 중에서, 산림조합은 서류작성에서 시업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Y町 산림조합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룹인증신청이 가능하였다.

이번 신청과정에서 산림조합에서 특히 문제 가 된 점과, 주의를 요하는 점을 거론한다.

① 별채량의 계획달성

Y町에서는 장벌기시업을 목표로 간벌을 반복하는 시업을 주로하고 있으며, 1개소에서 대량으로 별채재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림소유자들에게 금후 별채계획을 조사했지만, 개인 사정과 시장가격에 따라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계획별채량에 폭을 가지고, 금후 상황에 따라서는 町有林을 短代期의 완충역으로서 조합시켜 벌기, 별채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② 프로트 조사

이번에는 산림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하였다. 그러나 생장량이나 축적량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로트를 설정하고 정도가 높은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부를 “쌓아올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고 한다.

③ 실행상황의 감시

Y町 산림조합에서는 식재, 별채, 도로개설 까지 모든 시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과 산림소유자는 山林信話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로, 인증대상림에서 조합실행 이외의 시업도 있다. 자원관리자는 그점을 포함한 시업실행상황의 감시가 필요하다.

④ 환경에 배려한 시업

하천에서 10m 이내의 河畔林에 대한 시업의 배려, 장벌기복총림에 대한 유도 등이 필요하다. 희소식물에 대해서는 縣의 레드데이터북을 통해 검토한 후, 없다고 보고하였지만, 차후에 희소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하총식생의 벌채를 중지하는 등 시업측면에서 대응한다.

⑤ 보호림의 추급

FSC의 기준과 지표로서, RM의 관리산림 내에 보호림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Y町에서의 활엽수천연생림은 주로 신탄림이며, 이것들을 보호림대상으로 한다. 사유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향도 있고, 조합으로서도 이번 신청시에 산림소유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협약 하였으므로, 보호림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町有林과 조합소유림의 활엽수림을 모두 보호림취급을 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⑥ 영어에 대한 대응

신청서류를 영어로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심사원도 영어로 심사를 한다. 1999년 5월 연구모임의 통역으로서 Y町주재 외국인의 협력, 서류신청에 대한 번역작업도 縿이 위탁한 일본 임업기술협회와 縿廳 직원들의 도움이 불가결하였다.

5. 결언

1980년대부터, 열대림이나 북방림의 파괴

등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온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에 라벨을 첨부하여 차별화하는 산림인증제도가 환경 NGO로부터 제안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그 확산의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의식이 뒷받침하고 있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도 목재 구입을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가면서 구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지 의문이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수출상품의 포장 등에 요구하는 등 임산물의 국제거래를 제한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산림에 대한 취급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나타내는 기준 등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나라별로도 북쪽과 남쪽의 지형뿐 아니라 수종과 산림취급방법이 다르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자연법칙에 합치되게 산림을 취급하는 방법, 그것이 결국 환경과 경제가 하나가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으로 인증제도를 고려할 경우, 환경비용을 경제부문으로 내부화해 가는 시스템의 확립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같이 산림소유구조가 영세한 나라에서는, 산림을 어떻게 단지화하여 경영단위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산주들을 뒷받침 할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한 합의형성, 산림계획자료 등의 정보화문제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산림인증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산림과 임업발전 수준, 소비자들의 의식 등 전반적인 평가지표로서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은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적 임업에서는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전략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영세한 산주조직으로 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생산자측에서 山林認證의 목표인 인증상품의 부가가치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선전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격상승 혹은 생산량 증대에 의한 이익향상이 있는가, 또한 이익향상에 의해 認證비용이 흡수될 것인가, 실제로 認證제품이 유통되지 않고서는 불명확하다. 이러한 점들은 외국의 사례를 유의하여 검토해 가면서, 앞으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